

『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
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 미 경 의원 외 5명

2. 제안이유
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최저 보험료가 변경됨에 따라, 기존 조례의 지원 대상 기준을 개정하여 저소득시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의료복지의 형평성을 제고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정의(안 제2조)
- 지원 대상(안 제3조)
 - (현행)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,000원 미만인 가구
 - (변경)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가구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1. 11. 12. ~ 11. 19.) 결과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생계가 어려운 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대상자가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, 등록 장애인 가구, 한부모 가족 가구 등 사회적 약자이며,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보험료를 우리시에서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와 의료권 보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,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조례와 우리시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으나 경상북도 조례상 지원대상이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되지 않아 도비 지원금은 동일한 반면 시비 부담은 증가할 것이 예상됨.